

예산총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6,390,678	7,391,720
일반회계	224,083,340	6,722,500
특별회계	22,307,338	669,220
기타특별회계	22,307,338	669,220
주택사업특별회계	40,104	1,203
기반시설특별회계	130,050	3,90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2,000	15,060
의료보호특별회계	611,094	18,33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636,000	49,080
장학사업특별회계	6,413,949	192,4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815,432	54,463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42,342	25,270
수질개선특별회계	10,316,367	309,49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제 4 조 (명시이월사업) "해 당 없 음"

제 5 조 (사고이월사업) "해 당 없 음"

제 6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05,828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722,500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위 비목 상호 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